

인천지방법원 2023. 2. 16 선고 2021가합634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일

피고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구형준

변론 종결2023. 1. 12.

판결 선고2023. 2. 16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D1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 11. 28. 체결된 매매계약을 36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 A에게 210,000,000원, 원고 B에게 15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 A은 D에게 2016. 8.~2018. 11.경 합계 210,000,000원을, 원고 B은 D에게 2020. 5. 27. 150,000,000원을 각 대여해준 채권자인데, D는 2020. 11. 28. D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중 D의 1/2지분(이하 '이 사건 상가'라 한다)을 피고에게 매도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하여 무자력 상태이므로,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, 피고로부터 가액반환을 받아야 한다.

나. 판단

갑 제2, 3, 6 내지 8, 10, 1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에게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들에게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1) 원고 A과 D 명의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의 기재나, 원고 B이 G에게 150,000,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G으로부터 1,500,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2)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가 D의 소유였던 사실은 인정되나, 그것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달리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.

2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정창근

판사정승진

판사박승균

별지

1) 원고들은 'E'로 기재하였으나, 이는 'D'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'D'로 기재한다. 이하 같다.